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76 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민형배·정동영·양부남

이개호 · 김문수 · 안도걸

조계원 · 손명수 · 소병훈
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당과 시·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마련함에 따라, 현행법에 지역 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(안 제38조제2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277호) 및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92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제3호 중 "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) 및 시·도당"을 "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), 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정당의 회계처리) ① (생	제38조(정당의 회계처리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당헌·당규에는 다	2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	
한다.	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	3. 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
<u>다) 및 시·도당</u> 이 물품·용	<u>다), 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역을 구입・계약하고자 하는	
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	
한 사항	
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	③
(<u>시·도당</u> 의 경우에는 그 대표	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매	
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	
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, 그 결	
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	
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회계보고) ① 회계책임자	제40조(회계보고) ①
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	
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	

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(이하 "회계보고"라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- 1. 정당의 회계책임자
 - 가.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

15일(시·도당의 경우에는

1월 31일)까지

나.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(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)부터 선거일 후 20일(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)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(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40일)까지,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(시·도당은 1월 31일)까지

1
가
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 -
나
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다

다.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
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
거 등에 참여한 연도
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
목에 의하고, 당해 <u>시·도</u>
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
목에 의한다.

 2. ~ 5. (생 략)

 ② ~ ⑥ (생 략)

<u>刘·도</u>
<u>당 및 지역당</u>
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2.